

2022년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2. 8.(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34건(안건번호 제2022-4585호~521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585호~4587호는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588호는 쇼핑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판매중인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589호~4595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소명하여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점, 공인에 대한 사진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야 함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596호는 심의위원회에 의한 실질적 저작물성 판단이 어려운 점, 관리자가 직접 요청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점, 형사고발이 진행 또는 예정 중인 사안인 점,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4617호~5207호는 웹하드 및 ■■■■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08호~5218호는 ■■■■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및 교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1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5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2-2036호~248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 총 37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하고 현재 부존재 사이트인 ‘□□□□’의 79개 URL 정보에 대해서는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4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585호~4587호는 민원인들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이며,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585호~45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58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에서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사람들은 정품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물의 후기를 보면 ‘정품이 너무 비싸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음.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은 워낙 고가여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 중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A 위원: 수요가 양적으로 많지 않아 시장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됨. 교육용 프로그램을 따로 판매하는 등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458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58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589호~459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커뮤니티 사이

트 등에 게시된 사진 게시물 총 7건으로, 민원인은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한 저작권자로 확인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이 건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저작물성이 인정되었고, 민원인이 구제를 받았던 적이 있는 저작물임.
- D 위원: 공정이용 이슈가 있으며, 법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소위 ‘میم’ 같은 놀이의 일종인데 여기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저는 피사체의 초상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초상권보다는 표현의 자유 문제인가?
- A 위원: 초상권 문제는 오늘 쟁점이 아닌 것 같고 문제의 핵심은 저작자임. 예를 들어 민원인이 언론인 즉 사진기자라면 사진은 언론사의 저작물이 되며 다른 출판사, 언론사가 그 사진을 쓰려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함. 그리고 민원인은 실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여 이긴 적도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호원에 전송중단을 요청한 것임. 우리 시정권고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신중하게,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소극주의적 의견이 있지만, 제 의견은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133조의3을 문언해석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적

극적으로 시정권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적극주의적 의견임. 제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 건 또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 전체를 확인해 보았으면 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모든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사진 한 장과 글 한 줄 정도로 이루어져 있음. 사진은 원저작물 한 장만을 사용한 것, 다른 인물의 사진과 함께 편집한 것 등이며, 각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편집 사진은 인터넷 ‘میم’으로 이미 유명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촬영한 공인의 사진을 ‘میم’등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만약 시정권고를 한다 해도, 해당 인물의 사진 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 A 위원: 민원인은 이런 저작권 이용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임. 이미 소를 제기하여 이긴 적도 있는 분임. 우리가 이런 경우까지 시정권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나 이런 논의도 가능할 수 있으나, 제 의견으로는 시정권고를 가결하여야 함. 민원인은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고, 이후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허락없이 쓰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해서 우리에게 삭제요청을 한 것임. 그런데 스스로 수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게 된다면 행정청에 의한 신속한 구제라는 우리 제도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것임.

- D 위원: 저는 부결 의견임. 피사체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정이용 문제로 접근하여야 함.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 오로지 원저작물 사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해당 저작물이 편집 사진 전체나 자신의 의견 표명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요소도 사용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어야 함. 그리고 다른 사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보면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주장될 수 있음. 공정이용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 이를 행정지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소극주의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C 위원: 표현의 자유 보호 관점도 타당하지만, 다른 사진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민원인의 주장과 소명 정도에 비추어 보아 가결 의견임.
- B 위원: 이 사진에 대해 무단전재금지 표시는 되어 있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최초 출처인 민원인 홈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어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나 mim을 만든 사람이 이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공인의 사진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저작권보호원이 시정권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B 위원: 원칙대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저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단지 해당 공인을 나타내려는 의도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으로 얼마든지 교체 가능할 것임.
- C 위원: 공정이용으로 보기에는 출처 표시도 없고, 다른 사진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권현영 분과위원장: 참석 위원 다섯 분 중 과반수인 세 분이 가결 의견이시기 때문에 안건번호 제2022-4595호~459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안건번호 제2022-459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시험문제 제공 사이트 ‘▽▽▽▽’에 게시된 시험문제 총 2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 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의 시험문제만 심의요청된 것인가? 이 사이트 자체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시험지를 스캔하거나 타이핑해서

제공하는 사이트임.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해당 사이트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으로는 해당 1개교의 시험문제를 특정하였음.
- E 위원: 민원인은 직접 문제를 내신 선생님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제3자이며, 선생님께서 시험문제 원본을 전달받아 제출하였다고 밝혔음.
- E 위원: 시험문제 자체도 다른 저작물에 기반하여 출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판단하여 시정권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참고로 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는 저작물의 이용료 등과 관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한 적이 있음. 당시 기준에 의하여 OSP가 직접 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 부결한 바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들었던 것은 관리자와의 계약 관, 시험지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는 점을 들었음.
- E 위원: 취득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학생인지?
- A 위원: 시험을 치른 학생으로부터 업체가 구입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함. 우리가 저작물성 판단을 확

정하기도 어렵고, 고발 등으로 펜딩(pending)되어 있는 사건에 조사 권한도 없는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시정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4596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596호는 심의위원회에 의한 실질적 저작물성 판단이 어려운 점, 권리자가 직접 요청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점, 형사고발이 진행 또는 예정 중인 사안인 점, 교육당국의 정책적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597호~461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597호~461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617호~520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돈 룩 업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653호 ‘(영화)돈 룩 업 (2021)’ 는 2021. 12. 8. 공개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50포인트에 배포중임.
(‘(영화)쌍2계더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689호 ‘(영화)쌍2계더 (2021)’ 는 2022. 1. 5.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87포인트에 배포중임.
(‘(게임)로도스도 전기 - 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 Record of Lodoss War-Deedlit in Wonder Labyrinth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206호 ‘(게임)로도스도 전기 - 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 Record of Lodoss War-Deedlit in Wonder Labyrinth (2021)’은 2021. 5. 27. 발매한 PC게임으로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415건에 대해 시정권

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4617호~520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617호~520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208호~521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뮤지컬 실황 영상의 판매 및 교환 글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D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208호~521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4585호~4587호, 제2022-4588호, 제2022-4589호~4595호, 제2022-4597호~4616호, 제2022-5208호~5218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4596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4617호~520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036호~2485호 중 안건번호 제2022-2407호~2485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